

2017년도 제 2차

(2017. 02. 17)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세 한 대 학 교

#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2017년도 제 2차

회의소집 통보일	2017. 02. 07
의원정수 11명	참석의원 7명

1. 일 시 : 2017. 02. 17. 11:00
2. 장 소 : 영암캠퍼스 대학본부 3층 회의실
3. 참 석

구 분	직 명	성 명	비 고
참 석	의 장	안종기	
불 참	부 의 장	류승희	
불 참	의 원	박희석	
불 참	의 원	이봉숙	
참 석	의 원	박상진	
참 석	의 원	전노선	
참 석	의 원	박장현	
참 석	의 원	강창규	
불 참	의 원	정상문	
참 석	의 원	김 응	
참 석	의 원	최기영	

## 4. 회의 안건

- 가. 학칙 개정 건.
- 나.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건.
- 다.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 자문 건.
- 라.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 5. 회의내용

(간서명 : 김창규 · 박장현 · 전노선 )

안중기 의장 :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2차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첫번째 안건은 학칙개정(안)입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강창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의원은 학칙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의원이 학칙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다.)

## 세한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 1. 개정 이유

학부를 계열별로 분류하여 학과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영암캠퍼스와 당진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캠퍼스의 특성화를 위해 단과대학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경찰소방대학, 한류문화컨텐츠대학, 항공대학, 보건복지계열, 사범계열 등을 둠(제4조제1항)  
 나. 이 대학교 각 단과대학 및 계열에 학부(과) 또는 전공을 둠(제4조제3항)

### 3. 신규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대학·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u>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사범, 보건계열</u> 등을 둔다. ② 이 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을 둔다. ③ 이 대학교 각 계열에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둔다. ④ 이 대학교 일반대학원에 학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둔다. ⑤ 이 대학교의 소재는 영암캠퍼스와 당진캠퍼스로 구분한다.	제4조 (대학·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u>경찰소방대학, 한류문화컨텐츠대학, 항공대학, 보건복지계열, 사범계열</u> 등을 둔다. ② 좌동 ③ 이 대학교 각 대학 및 계열에 학부(과) 또는 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을 둔다. ④ 좌동 ⑤ 좌동  <div style="text-align: center;">부 칙</div>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00월00일부터 시행한다.

안중기 의장 : 강창규의원으로부터 학칙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간서명 : 강창규 · 박장현 · 권선 )

박희석 의원 : 학칙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안종기 의장 : 학칙개정(안) 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 의 원 : 없습니다.

안종기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학칙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건입니다. 본안도 강창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의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부담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기에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총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고 총액중 ₩38,100,000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안입니다.

안종기 의장 : 강창규의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박희석 의원 :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안종기 의장 :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 의 원 : 없습니다.

안종기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 자문 건입니다. 본안도 강창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규의원이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자금예산에 대해 설명하다.)

(간서명 : 강창규 · 박희석 · 권희선 )

2017회계연도 추경예산(안)

<교비회계 >

(단위 : 천원)

과목명	지 출		
	추경예산(A)	본예산(B)	증감액(A-B)
보수	12,630,133	13,189,425	△559,292
관리·운영비	7,572,713	6,310,297	1,262,416
연구·학생경비	13,531,473	12,453,227	1,078,246
교육외비용	358,911	296,438	62,473
전출금			
예비비	1,360,000	1,532,800	△172,800
투자및기타자산지출	12,401	3,000	9,401
고정자산매입지출	5,733,680	7,127,845	△1,394,165
유동부채상환	875,000		875,000
고정부채상환	3,000		3,000
학교기업사업비		183,890	△183,89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1,412	622,528	△561,116
자금지출총계	42,138,723	41,719,450	419,273

안종기 의장 : 강창규의원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박희석 의원 :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원안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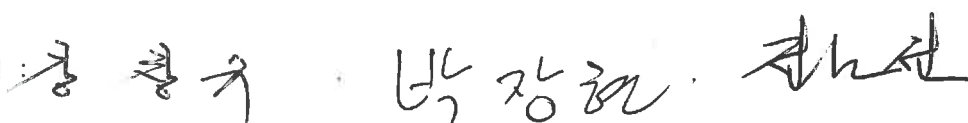
안종기 의장 :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 의원 : 없습니다.

안종기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다음은 라. 평의원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 자문 건입니다. 본안도 전노선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 이유

대학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법령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위원회 등을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위원회 등이 회의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등 회의 개최·운영·결과 공개에 대한

(간서명 :  )

규정 을 개정 함.

##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정관 제3장 제3절 제31조의 2”를, “정관 제3장 제3절을 제26조”로 개정하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개정하고

제4조(위촉) ②항에 “전조 제1항 제3호의 평의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재학생으로 한다.”를 “전조 제1항 제2호의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회의를 통해 추천한 재학생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임기) “③ 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 할 경우 각 구성단위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④ 총장은 평의원회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구성 단위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 단위는 추천을 의뢰 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해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회의) ①항에 “매학기 1회 개최한다.”를 “매학기 1회 개최하며, 평의원회 회의소집은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할 사항은 예외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10조(비밀유지)에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재임기간 중 이를 위반할 경우는 재적평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촉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 (회의공개) ① 회의 개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고한다. (신설 2017.02.28)

② 회의결과를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02.28)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신설 2017.02.28)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신설 2017.02.28.)“을 신설하고,

“제 3 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를 “제 4 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로 개정하고,

“제14조(개방이사 추천)”를 “제15조(개방이사 추천)”로 개정하고,

“제15조(개방이사 추천 후보 선정) ① 평의원회 의원은 개방이사를 추천 할 수 있다.”를

“제16조(개방이사 추천 후보 선정) ① 평의원회 의원은 개방이사 2명을 법인에 추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추천의원을 5명 선발한다.”로 개정하고,

“제16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을 “제17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으로 개정하고,

개정 될 제17조(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에서 “②개방이사 후보자는 평의원회 의원이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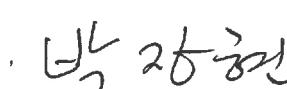

③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④ 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간서명 : 김철기 · 박강현 · 권선 )

“제17조(개방감사 추천)”을, “제18조(개방감사 추천)”으로 개정하고,  
 “제 4 장 추천위원회”를 “제 5 장 추천위원회”로 개정하고,  
 “제18조(추천위원회)”를, “제19조(추천위원회)”로 개정하고,  
 “제 5 장 보칙”을, “제 6 장 보칙”으로 개정하고,  
 “제19조(규정개정)”을, “제20조(규정개정)”으로 개정하고,  
 “제20조(준용)”을, “제21조(준용)”으로 개정하고,  
 18. 평의원회 운영 세칙을 전부 삭제하는 안입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영신학원 정관 제3장 제3절 제31조의 2에 의하여 설치한 세한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영신학원 정관 제3장 제3절 제26조에 의하여 설치한 세한대학교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위촉) ① -----생 략----- ② 전조 제1항 제3호의 평의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한 재학생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 4조 (위촉) ① -----생 략----- ② 전조 제1항 제3호의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재학생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 6 조 (임기) ① -----생 략----- ② -----생 략-----	제 6 조 (임기) ① -----생 략----- ② -----생 략----- ③ 평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 할 경우 각 구성단위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평의원회 임기만료 30일 이전까지 구성 단위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 단위는 추천을 의뢰받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해야 한다.

(간서명 :  ,  ,  )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회 의</b></p> <p>제 7 조 (회의 ) ①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한다.</p> <p>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회 의</b></p> <p>제 7 조 (회의 ) ① 평의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개최하며 평의원회 회의소집은 서면 또는 e-mail 등으로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심의할 사항은 예외로 한다.</p> <p>②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p>
<p>제10조 (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교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재임기간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p>	<p>제10조 (비밀유지) 평의원 및 관계교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재임기간 또는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재임기간 중 이를 위반할 경우는 재적평의원 2/3이상 찬성으로 해촉한다.</p>
	<p>“제14조 (회의공개) ① 회의 개최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고한다. (신설 2017.02.28)</p> <p>② 회의결과를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02.28)</p> <p>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신설 2017.02.28)</p> <p>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신설 2017.02.28)</p>

(간서명 : *김홍기 · 박광원 · 권민선* )



현 행	개 정 안
<p>제 3 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4조 -----생략-----</p>	<p>제 4 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제15조 -----생략-----</p>
<p>제15조 (개방이사 추천 후보 선정) ① 평의원회 의원은 개방이사를 추천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제16조 (개방이사 추천 후보 선정) ① 평의원회 의원은 개방이사 2명을 법인에 추천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개방이사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을 5명 선발한다.</p>
<p>제16조 (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이어야 한다.</p>	<p>제17조 (개방이사 후보자의 자격) ① 개방이사 후보자는 사립학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이어야 한다. ②개방이사 후보자는 평의원회 의원이 추천한다. ③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시 후보자의 학력, 현직 및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과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추천시 필요한 서류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④ 평의원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하여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7조 (개방감사 추천) 제14조 내지 제16조는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8조 (개방감사 추천) 제15조 내지 제17조는 개방감사 후보자의 추천 등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 5 장 추천위원회 제18조 (추천위원회) ①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p>	<p>제 5 장 추천위원회 제19조 (추천위원회) ① 평의원회에는 법인 정관 제21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정관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회에 개방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둔다.</p>
<p>제 5 장 보 칙 제19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p>	<p>제 6 장 보 칙 제20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평의원회 재적 평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p>

(간서명 : 김홍기 · 박강현 · 권선 )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	--

안중기 의장 : 전노선의원으로부터 평의회회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이사들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다 -

박장현 의원 : 평의회회 규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안중기 의장 : 평의회회 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전 의 원 : 없습니다.

안중기 의장 : 그럼 전의원이 동의하고 저 또한 동의하며 평의회회 규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 의장은 회의를 종결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 3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자 박장현의원, 강창규의원, 전노선의원으로 선임할 것에 참석의원 전원일치 찬동하여 발의내용과 같이 대표간서명자를 선정하다)

안중기 의장 : 장시간동안 심의하여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록이 정서되면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심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6. 의결사항

-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 2016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 2016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 평의회회 운영 규정 제·개정(안)을 원안대로 자문 의결함.

(간서명 : 김충기 . 박장현 권석진 )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 장 안 종 기



부위원장 류 승 희

인

의 원 이 봉 숙

인

의 원 박 희 석

인

의 원 박 상 진



의 원 전 노 선



의 원 박 장 현



의 원 강 창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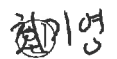
의 원 정 상 문

인

의 원 김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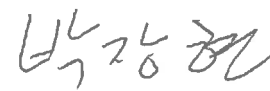

의 원 최 기 영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17. 02. 17.

세한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안 종 기

(간서명 :  ,  ,  )